

## 적도원칙

2013 년 6 월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금융업계 기준  
[www.equator-principles.com](http://www.equator-principles.com)

### 적도원칙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주의사항

본 문서는 적도원칙 원문 「THE EQUATOR PRINCIPLES JUNE 2013」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본 문서는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세심하게 준비되었으나, 적도원칙협회는 내용의 누락 및 불일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도원칙협회는 본 문서 이용자가 원문의 의도대로 내용을 이해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적도원칙 원문 「THE EQUATOR PRINCIPLES JUNE 2013」은 영어로 발행되었으며, 본 문서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도원칙 원문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 목 차

전문.....	2
적용 범위.....	3
접근 방법.....	4
원칙의 기술.....	5
원칙 1: 검토 및 등급 분류.....	5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5
원칙 3: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6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7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7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8
원칙 7: 독립 검토.....	8
원칙 8: 서약.....	9
원칙 9: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10
원칙 10: 정보공개 및 투명성.....	10
면책.....	11
부속서: 이행 요건.....	12
<i>주의: 부속서에 기술된 이행 요건은 적도원칙의 필수항목이며,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건이다.</i>	
부속서 A: 기후 변화: 대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표.....	12
부속서 B: 최소 정보공개 요건.....	13
별지: 보충 정보.....	15
별지 I: 용어 설명.....	15
별지 II: 환경·사회 평가문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예시목록....	20
별지 III: IFC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행표준과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	21

## 전문

대규모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Project)는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금융 및 자문 기관으로서 환경·사회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동반자인 고객과 협력한다. 이러한 공통의 노력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무성과 및 환경·사회적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EPFI")은 우리가 금융 지원하고 자문하는 프로젝트가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환경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개발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프로젝트가 생태계, 지역사회 및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능한 회피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완화 및/또는 상쇄되어야 한다.

우리는 적도원칙의 채택과 준수가 고객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Affected Communities)와 교류하도록 함으로서 우리 자신과 고객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있는 환경관리와 적도원칙에 따라 실시한 실사<sup>1</sup>를 통해 인권존중을 포함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인식한다.

적도원칙은 공통된 기준과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프로젝트 용자에 관한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기준에 적도원칙을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고객이 적도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Project-Related Corporate Loans)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 제공되는 브릿지론(Bridge Loans)과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Project Finance Advisory Services)의 경우, 우리는 고객에게 적도원칙 준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EPFI 는 이행 경험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결과와 새로운 모범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적도원칙을 검토한다.

---

<sup>1</sup>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국제 연합의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행"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참조

## 적용 범위

적도원칙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된다.

적도원칙은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하 4 가지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1. 프로젝트 총액이 US\$10 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2. 프로젝트 총액이 US\$10 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3. 다음 4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sup>2</sup> (구매자 신용(Buyer Credit) 방식의 수출금융(Export Finance) 포함)
  - i. 대출금액의 과반 이상이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질적 지배권(Effective Operational Control)을 갖는 단일 프로젝트와 관련
  - ii. 총 대출금액이 US\$100 백만 이상
  - iii. 해당 EPFI 의 약정금액이 (신디케이션 또는 매각 이전) US\$50 백만 이상
  - iv. 대출기간이 2 년 이상
4.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로 대환이 의도된 대출기간 2 년 미만의 **브릿지론**

적도원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EPFI 는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 또는 개선이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범위에 변화를 가져와 중대한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을 일으킬 수 있거나, 현존하는 환경·사회 영향의 성격이나 정도를 중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적도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sup>2</sup>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은 (고객에게 실질적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 신용(Supplier Credit) 수출금융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금융, 인수금융, 헤지거래, 리스, 신용장 거래, 일반자금 대출, 회사의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한 일반운전자금 대출과 같이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 접근 방법

###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EPFI 는 원칙 1~10 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을 제공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및 브릿지론**

EPFI 가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또는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경우, EPFI 는 고객에게 적도원칙의 내용, 적용방법, 그리고 계획 프로젝트에 적도원칙 적용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인지시켜야 한다. EPFI 는 고객이 이후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적도원칙의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EPFI 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PFI 는 적도원칙을 적용할 때까지 단계별로 고객을 안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원칙 1 에 정의된 바와 같이) A 또는 B 등급으로 분류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프로젝트가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고, 대출기간 동안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PFI 는 고객이 환경·사회 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이하 "평가") 프로세스에 착수할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사회 평가문서(Assessment Documentation, 이하 "평가문서")가 준비되고 프로젝트 개발이 대출기간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PFI 는 필요에 따라 (원칙 7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독립검토(Independent Review)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고객과 협력하여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를 지명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정보 공유**

위임받은 EPFI(Mandated EPFI)는 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도원칙을 일관된 형태로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만 필요에 따라 위임받은 다른 금융기관(Mandated Financial Institution)과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공유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적용범위"에 정의된) 금융상품의 지원여부와 지원조건에 대한 일체의 의사는 각각의 EPFI 가 내부 리스크 관리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 지원을 고려중인 EPFI 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이 위임받기 전이라도 환경·사회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허가를 고객에게 요청하기도 하며, EPFI 는 고객이 그러한 허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원칙의 기술

### 원칙 1: 검토 및 등급 분류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요청된 경우, EPFI 는 내부 환경·사회 검토 및 실사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에 근거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의 환경·사회 등급 분류 프로세스에 근거한다.

등급 분류를 활용함으로써 EPFI 의 환경·사회 실사는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개발단계와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수준에 비례하여 실시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불능이거나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

**B 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의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가능하고,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

**C 등급** - 부정적인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

###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모든 A 등급과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 는 고객에게 EPFI 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별지II의 예시목록 포함)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평가문서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완화 및 상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문서는 작성주체인 고객, 컨설턴트 또는 외부전문가에 관계없이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서술되어야 한다.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문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이하 "ESIA")를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문적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제한적인 고위험 상황의 경우, 고객은 구체적인 인권 실사를 통하여

평가문서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한적 또는 중점 환경·사회 평가(예시: 검사보고서)나, 환경 입지기준(Environmental Siting), 오염기준, 설계기준 또는 건설기준을 단순 적용할 수 있다.

소재지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젝트는 직접배출(Scope 1 Emissions) 및 간접배출(Scope 2 Emissions) 온실가스 합산량이 연간 10 만 CO<sub>2</sub> 환산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안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안분석의 요건은 부속서 A 를 참조한다.

### **원칙 3: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평가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소재국의 환경 및 사회 이슈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EPFI 는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한다. 그 중에는 사람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환경·사회 관리체계, 법률제도, 그리고 조직역량을 보유한 곳도 있고, 환경·사회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 및 조직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곳도 있다.

EPFI 는 평가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비지정국가(Non-Designated Countries) 소재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 프로세스는 당시 적용되는 IFC 의 환경·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행표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이하 "이행표준")과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이하 "EHS 가이드라인")(별지Ⅲ 참조)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2. 지정국가(Designated Countries) 소재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 프로세스는 환경·사회 이슈와 관련된 소재국의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지정국가의 법률은 환경 및/또는 사회 평가(원칙 2), 관리시스템 및 계획(원칙 4), 이해관계자 참여(원칙 5), 고충처리 메커니즘(원칙 6)의 요건을 충족한다.

평가 프로세스는 EPFI 가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준수 여부 또는 해당 적용기준으로부터의 정당화된 편차를 규명하여야 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EPFI 가 채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며, EPFI 는 단독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수도 있다.

####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모든 A 등급과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 는 고객에게 환경·사회 관리시스템(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이하 "ESMS")을 구축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평가 프로세스에서 제기된 이슈와 적용되는 기준의 준수 방안이 포함된 환경·사회 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이하 "ESMP")을 준비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기준이 EPFI 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고객과 EPFI 는 적도원칙 액션플랜(Action Plan, 이하 "AP")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적도원칙 AP 는 적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EPFI 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미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객의 약속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A 등급과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 는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의 지속적인 프로세스로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Other Stakeholders)와 함께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은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Informed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프로세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은 프로젝트의 위험과 영향, 개발 단계, 영향을 받는 지역의 선호 언어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소외 및 취약 계층의 요구에 따라 협의 프로세스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조종, 간섭, 강압 및 위협은 없어야 한다.

고객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위험과 영향에 상응하는 적정 평가문서를 현지언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은 합의된 모든 대책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의 결과를 고려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환경·사회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는 평가 프로세스의 초기,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착공 이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계속 공개되어야 한다.

EPFI 는 원주민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국제법상의 소재국 의무를 포함한 원주민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소재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IFC



이행표준 7(원칙 3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된 특수 상황처럼 원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이하 "FPIC")<sup>3</sup>가 요구된다.

##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모든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 는 고객에게 ESMS 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사항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프로젝트의 위험과 영향의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주된 이용자로 하여야 한다.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비용부담이 없고, 이슈 또는 우려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한 보복이 없는 쉽고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하여 우려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사법 또는 행정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고객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원칙 7: 독립 검토**

### **프로젝트금융**

모든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EPFI 의 실사를 돕고 적도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ESMP, ESMS,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문서를 포함한 평가문서에 대해 독립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프로젝트가 적도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적도원칙 AP 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여야 한다.

<sup>3</sup>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FPIC 의 정의는 없다. 고객과 영향을 받는 원주민 지역사회간 선의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FPIC 는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의사결정에 원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둔다. FPIC 는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 또는 소수집단에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객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않는 사항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FPIC 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는 IFC 이행표준 7 에 기술되어 있다.

##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독립검토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적 고위험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요구된다.

-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중요 서식지(Critical Habitats)에 대한 영향
- 문화유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
- 대규모 주민 이주

기타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의 경우, EPFI 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독립검토가 적절한지 아니면 내부 검토로 충분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다자, 양자 개발금융기관 또는 OECD 수출신용기관이 실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원칙 8: 서약

적도원칙의 중요한 강점은 준수에 관한 서약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고객은 환경·사회와 관련된 소재국의 모든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을 모든 중요 측면에서 준수할 것임을 금융계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모든 A 등급과 B 등급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내용을 금융계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 a)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모든 중요 측면에서 ESMP 와 적도원칙 AP(해당되는 경우)를 준수한다.
- b) 내부 직원 또는 제 3 자 전문가에 의해 준비된 정기 보고서를 EPFI 와 합의한 양식으로 제출하며(보고 빈도는 영향 정도에 비례하거나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최소한 일년에 한번 이상), 정기 보고서는 (i) ESMP 와 적도원칙 AP(해당되는 경우)의 준수 여부를 문서화하고, (ii) 프로젝트 소재 지역, 주 및 국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진술을 제공한다.
- c) 해체계획이 합의된 경우, 필요에 따라 해체계획에 맞게 시설을 해체한다.

고객이 환경·사회에 관한 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PFI는 프로젝트가 다시 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객과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합의된 유예기간 내에 고객이 서약 준수를 못하는 경우, EPFI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책 행사 권리를 보유한다.

## **원칙 9: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 **프로젝트금융**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금융종결(Financial Close) 이후 대출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모든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EPFI와 공유되는 고객의 모니터링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를 선임하거나 고객에게 자격과 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원칙 7에 의해 독립검토가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EPFI와 공유되는 고객의 모니터링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종결 이후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를 선임하거나 고객에게 자격과 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원칙 10: 정보공개 및 투명성**

### **고객의 정보공개 요건**

다음과 같은 고객의 정보공개 요건은 원칙 5의 공개 요건에 추가된다.

모든 A 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 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 고객은 최소한 ESIA 요약문이 온라인<sup>4</sup>으로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이 10만 CO<sub>2</sub> 환산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은 프로젝트 운영기간 동안 배출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자세한 요건은 부속서 A를 참조한다.

<sup>4</sup> 단, 고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EPFI 의 정보공개 요건

EPFI 는 적절한 비밀유지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금융종결 거래와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및 경험에 대하여 최소한 1 년에 한번 공개하여야 한다. EPFI 는 부속서 B 에 자세히 기술된 최소 정보공개 요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면책

적도원칙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준과 틀이다. 적도원칙은 어떠한 개인이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자발적 및 독립적으로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IFC, 세계은행그룹, 적도원칙협회(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또는 다른 EPFI 에 의존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이 적도원칙의 요건과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률과 규정이 우선한다.

## **부속서: 이행 요건**

### **부속서 A: 기후 변화: 대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표**

#### **대안분석**

대안분석은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프로젝트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 및 재무적으로 실행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직접배출에 대한 대안분석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연료 또는 에너지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대안분석이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대안분석은 해당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일정을 따라야 한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섹터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안분석은 채택한 기술과 비교 가능한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동종업계 및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실행가능 기술의 비교분석을 포함한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섹터란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다음의 섹터(화력 발전, 시멘트 및 석회 제조, 일관 제철소, 비금속 제련 및 정련, 주조업)를 포함한다.

고객은 대안분석 완료 후 적절한 문서화를 통하여 기술 및 재무적으로 실행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기준(예시: 국제금융공사 이행표준 3)에 명시된 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 **배출량 산정 및 공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과 모범 기준에 따라 고객에 의해 수행된다. 고객은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산정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만 CO<sub>2</sub> 환산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EPFI 는 고객이 운영기간 동안 매년 연간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을 공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만 CO<sub>2</sub> 환산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고객의 공표는 권장되어야 된다. 공표 요건은 소재국의 정보공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제 요건, 또는 프로젝트 단위의 배출량 보고가 이루어지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와 같은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충족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대안분석 또는 프로젝트 단위의 배출량 공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부속서 B: 최소 정보공개 요건**

EPFI 는 아래 섹션에 자세히 기술된 요건에 따라 연 1 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적용건수 및 이행 보고**

적용건수 및 이행 보고는 EPFI 의 책임이다. 이는 EPFI 웹사이트 의 동일 위치에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EPFI 는 모든 적용건수 및 이행 보고에 대한 보고기간(예시: 시작 및 종료일자)을 명시한다.

###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적용건수***

EPFI 는 보고기간 동안 위임을 받은 프로젝트금융 자문 서비스의 총 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 건수는 섹터와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에 대한 적용건수는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과 구분하여 별도의 제목하에 보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의 경우, 보통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활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등급과 독립검토 실시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적용건수***

EPFI 는 보고기간 동안 금융종결에 이른 프로젝트금융 총 건수와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의 총 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 상품별 총 건수는 등급(A, B 또는 C)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섹터 (광업, 인프라, 석유 및 가스, 전력, 기타)
- 지역 (미주, 유럽·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 국가 (지정국가 또는 비지정국가)
- 독립 검토 실시 여부

프로젝트금융과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에 대한 적도원칙 적용건수는 각각 표시되어야 한다.

### **브리징론 적용건수**

브리징론에 대한 적용건수는 특성상 정보공개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이행 보고**

EPFI 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도원칙 이행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적도원칙 검토자(Equator Principles Reviewers)의 권한 (예시: 책임과 인원)
- 심사과정에서 적도원칙 담당자, 영업부서 그리고 경영진 각각의 역할
- 신용 및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절차에 적도원칙 도입

적도원칙 채택 최초 연도에 대해서 EPFI 는 내부 준비 및 직원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초 연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PFI 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프로젝트명 공개**

EPFI 는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 게재를 위해 프로젝트명 자료를 적도원칙협회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명 보고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금융이 종결된 프로젝트금융 거래에 해당할 것
- 고객의 동의를 득할 것
- 적용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할 것
- 보고 결과로서 특정 관할권에서 EPFI 의 추가 부담이 없을 것

EPFI 는 금융종결 이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EPFI 는 다음 프로젝트명 자료를 직접 또는 이를 게재한 웹링크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명 (대출 계약서상 명칭 및/또는 공개적으로 인정된 명칭)
- 거래가 금융종결된 년도 (역년)
- 섹터 (광업, 인프라, 석유 및 가스, 전력, 기타)
- 소재국명

개별 EPFI 는 자체 보고의 일환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 별지: 보충 정보

### 별지 I: 용어 설명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한, 적도원칙은 IFC 이행표준에 기술되어 있는 정의를 사용한다.

**Affected Communities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영향 범위 내에 있고,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지 공동체.

**Assessment (평가):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환경·사회 평가) 참조.**

**Assessment Documentation (평가문서):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Documentation (환경·사회 평가문서) 참조.**

**Asset Finance (자산금융):** 자산(예시: 항공기, 화물선, 장비) 구입 용도의 대출로서,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

**Bridge Loan (브릿지론):** 보다 장기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에 제공되는 잠정적인 대출.

**Buyer Credit (구매자 신용):** 수출자 측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구매자 또는 구매자 측의 은행에 대출하는 중장기 수출신용.

**Critical Habitats (중요 서식지):** 다음과 같은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지닌 지역 (i) 멸종위급 및/또는 위기종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 (ii) 고유종 및/또는 서식지역이 한정된 종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 (iii)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및/또는 무리를 이루는 종의 집단을 지원하는 서식지, (iv)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생태계 및/또는 독특한 생태계, 그리고/또는 (v) 중요한 진화 과정과 연관된 지역.

**Designated Countries (지정국가):** 사람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환경·사회 관리체계, 법률제도 및 조직역량을 보유한 국가이며, 지정국가 목록은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에서 참조 가능.

**Effective Operational Control (실질적 지배권):**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의 직접적인 지배(운영자 또는 주요주주로서)와 간접적인 지배(예시: 고객의 자회사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포함.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Assessment) (환경·사회 평가 또는 평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노동, 보건, 안전 포함)을 식별하는 프로세스.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Documentation (Assessment Documentation) (환경·사회 평가문서 또는 평가문서):**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되는 일련의 문서이며, 문서의 범위와 세부사항은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에 비례함. 평가문서의 예로는 환경·사회영향평가서(ESIA), 환경·사회 관리계획(ESMP), 그리고 범위가 더욱 제한된 문서(검사보고서, 위해성 평가서, 유해성 평가서, 프로젝트 관련 환경 허가서 등)가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일환으로 비기술적 환경 요약문을 공개함으로써 평가문서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음.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환경·사회영향평가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로, 통상 중대한 환경 또는 사회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특정 물리적 요소, 양상 및 설비를 수반하는 신규 개발 또는 대규모 확장 사업에 대해 준비되며, ESIA 가 다루는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관한 개요는 별지표에 마련되어 있음.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ESMP) (환경·사회 관리계획):** 평가의 일환으로 식별된 위험과 영향을 회피, 최소화 및 보상/상쇄를 통하여 다루고 완화하기 위한 고객의 약속을 요약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인 완화 조치의 간략한 설명부터 보다 포괄적인 관리계획(예시: 물 관리계획, 폐기물 관리계획, 이주 조치계획, 원주민 계획,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계획, 해체계획)까지 다양할 수 있음. ESMP 의 세부사항 및 복잡성의 정도와 식별된 조치 및 대응방안의 우선순위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며, ESMP 의 정의와 특징은 IFC 이행표준 1 에 기술된 관리 프로그램(Management Program)과 대체로 유사함.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ESMS)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기업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 사회,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ESMS 는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및 관리하도록 설계됨. ESMS 는 매뉴얼과 관련 근거문서로 구성되며, 정책, 관리 프로그램 및 계획, 절차, 요건, 성과지표, 책임, 교육과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한 환경·사회 이슈 관련 정기적 감사 및 검사가 포함됨. ESMS 는 ESMP 및/또는 적도원칙 AP 의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본 용어는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혹은 양 기간 동안의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음.

**Equator Principles Action Plan (AP) (적도원칙 액션플랜):** 프로젝트가 적도원칙에 정의된 적용기준을 충족하는데 있어 평가문서, ESMP, ESMS 또는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기록한 문서에 나타난 미비점을 다루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EPFI 실사의 결과로서 준비되며, 적도원칙 AP 는 통상 표 형식으로 완화조치부터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사 또는 계획에 이르는 명확한 대응방안을 나열함.

**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적도원칙협회):** 적도원칙의 관리,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EPFI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단체임. 적도원칙협회 사무국은 EPFI 의 프로젝트명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포함한 적도원칙협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 참조.

**Equator Principles Reviewers (적도원칙 검토자):**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의 환경·사회적 측면을 검토하는 EPFI 의 직원으로, 이들은 별도의 적도원칙팀 소속이거나 적도원칙의 내부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심사, 지속가능경영 (또는 유사한) 부서/부문의 구성원일 수 있음.

**Export Finance (수출금융 또는 수출신용):** 수출 재화 및/또는 서비스의 해외 구매자가 대금 지불을 일정기간 동안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증 또는 금융주선을 뜻하며, 수출신용은 일반적으로 단기, 중기(통상 2~5 년 상환), 장기(통상 5 년 이상)로 나뉨.

**Financial Close (금융종결):** 차입금의 최초 인출에 관한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조건의 이행이 면제된 날짜.

**Informed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의견 및 정보의 심도 있는 교환과 고객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제안된 완화 방안, 개발 이익과 기회의 공유, 이행 이슈 등)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협의.

**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 EPFI 가 인정하는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적격 독립 법인 또는 컨설턴트.

**Independent Review (독립검토):** 환경·사회 관리계획,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포함된 평가문서에 대해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검토.

**Known Use of Proceeds (자금용도):** 차입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

**Mandated 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 or Mandated Financial Institution (위임받은 EPFI 또는 위임받은 금융기관):**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 또는 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과 계약한 금융기관.

**Non-Designated Countries (비지정국가):**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의 지정국가 목록에 없는 국가.

**Operational Control (사업에 대한 지배권): Effective Operational Control (실질적 지배권)** 참조.

**Other Stakeholders (기타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해당 프로젝트와 인접 프로젝트 및/또는 비정부기구가 포함될 수 있음.

**Project (프로젝트):** 분야를 불문하고 특정 소재지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며, 생산량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개선도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됨. 적도원칙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는 발전소, 광업, 석유 및 가스 개발, 화학공장, 인프라 개발, 제조공장, 대규모 부동산 개발, 민감지역에서의 부동산 개발 및 중대한 환경 및/또는 사회 위험과 영향을 발생시키는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수출신용기관 지원 거래의 경우, 수출 대상 신규 영리, 인프라 또는 산업 관련 사업은 프로젝트로 간주됨.

**Project Finance (프로젝트금융):** 대출기관이 단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 및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금융은 발전소, 화학 처리 공장, 광업, 교통 인프라, 환경, 통신 인프라와 같이 대체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설비를 위해 사용됨. 프로젝트금융은 신규 자본재 설비의 건설을 위한 금융이나 개선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기존 설비에 대한 대환의 형태를 취하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에서 대출기관은 발전소가 판매하는 전력과 같이 프로젝트 생산물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원으로부터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상환받게 됨. 고객은 일반적으로 설비의 개발, 소유 및 운영 이외의 다른 역할 수행은 금지된 특수목적법인이며, 따라서 대출상환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산의 담보가치에 주로 의존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11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자본측정 및 자본기준의 국제 통일에 관한 새로운 기준 ("바젤 II")"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Basel II")] 참고. 비소구형 금융으로서, 대출금이 하나의 특정 매장자원 (예시: 유전 또는 광산) 개발에 사용되는 광업분야의 매장량기초금융은 적도원칙 하에서 프로젝트금융으로 간주됨.

**Project Finance Advisory Services (프로젝트금융자문 서비스):** 개발에 대한 잠재적 금융조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은 금융조달 옵션 중 하나일 수 있음.

**Project-Related Corporate Loans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단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업체(민간, 공공, 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에 대출하는 것으로, 자금용도가 신규 개발 또는 확장(예시: 시설면적의 확대)에 해당되고,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단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 a) 대출기관은 (프로젝트금융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며, 기업 또는 모회사 보증 형태로 담보권 존재
- b) 대출서류에 전체 대출금의 과반이 해당 프로젝트 용도임이 명시되고, 이러한 대출서류는 금융조건 제안서, 사업설명서, 대출 계약서 또는 대출의 자금용도에 대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기타 진술을 포함할 수 있음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은 정부 소유 기업과 정부를 대신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타 법인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에 대한 대출은 제외.

**Scope 1 Emissions (직접배출):** 프로젝트의 물리적 경계 안에 위치하며, 소유 또는 통제되는 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2 Emissions (간접배출):** 프로젝트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외부 생산과 관련하여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ensitive Area (민감지역):** 습지,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갖는 산림,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 원주민 및 기타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지역, 국립공원 및 국가 또는 국제법으로 인정된 기타 보호지역과 같이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

**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참여):** 외부 커뮤니케이션, 환경·사회 정보공개, 참여,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 그리고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IFC 이행표준의 규정을 말하며, 적도원칙에서는 원칙 5에 기술된 모든 요건도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미함.

**Supplier Credit (공급자 신용):** 수출업체가 해외 수입업체에게 공여하는 중장기 수출신용.

## **별지 표: 환경·사회 평가문서에서 다루어져야할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예시목록**

아래 목록은 평가문서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의 개요를 제공한다. 목록은 단지 예시 용도임에 주의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평가 프로세스는 나열된 모든 이슈를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슈만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문서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환경·사회 기초 현황 평가
- b) 실행가능하고 환경·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안 검토
- c) 소재국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른 요건
- d) 생물 다양성(멸종위기종과 교란된 서식지, 자연 및 중요 서식지의 민감한 생태계 포함)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법정보호지역
- e)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 (적절한 독립 인증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포함)
- f) 위험물질의 사용 및 관리
- g) 주요 유해성 평가 및 관리
- h)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 운송 및 사용
- i)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최소화, 오염통제(액체폐수 및 대기 배출) 및 고형 및 화학 폐기물 관리
- j)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상패턴 및 기후조건 변화와 적응 기회를 고려한 프로젝트 운영의 성공가능성
- k) 기존 프로젝트, 지원 대상 프로젝트, 그리고 향후 계획된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 영향
- l)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예방, 완화 및 관리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함으로써의 인권 존중
- m) 노동 관련 이슈(4개의 핵심노동기준 포함) 및 직업 보건과 안전
- n)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의 협의 및 참여
- o) 사회경제적 영향
- p)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그리고 소외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
- q) 성별 영향과 불균형적인 성별 영향
- r)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 s) 원주민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제도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 t)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
- u)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보호 (프로젝트의 보안요원 활용에 따른 위험, 영향 및 관리 포함)
- v) 화재예방 및 생명안전

## **별지 Ⅲ: IFC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행표준과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

적도원칙에서 원칙 3의 “당시 적용되는 기준”이란 IFC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의 2개 개별 부분을 뜻한다.

### **1. IFC 이행표준**

2012년 1월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행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평가 및 관리
- 2 - 노동 및 노동 환경
- 3 -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 4 -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보안
- 5 -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 6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7 - 원주민
- 8 - 문화 유산

각 이행표준별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EPFI는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지만, EPFI 및 고객이 이행표준에 대한 추가 지침이나 해석을 찾고자 할 때 지침서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IFC 이행표준, 지침서, 그리고 산업부문별 가이드라인은 IFC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2.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은 IFC 이행표준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산업에 관한 국제 모범 기준(Good International Industry Practice, GIIP)의 사례를 담고 있는 기술적 참고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비지정국가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규 시설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수준과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다음 두 가지 지침이 사용된다.

***일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 (The General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이 가이드라인은 잠재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범분야 이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 직업 보건 및 안전, 지역사회 보건 및 안전, 건설, 그리고 해체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산업부문별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산업부문별 가이드라인 (The Industry Sector Guidelines)**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별 특유의 영향과 성과지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산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그룹으로 분류된다.

#### 농업 관련 산업 및 식량 생산

- 일년생 작물 생산
- 수상 양식
- 양조
- 유제품 가공
- 어류 가공
- 식품 및 음료 가공
- 축산
- 육류 가공
- 다년생 작물 생산
- 가금류 가공
- 가금류 생산
- 제당
- 식물성 기름 가공

#### 화학

- 석탄 가공
- 대규모 무기화합물 제조 및 콜타르 증류
- 대규모 석유계 유기화학물질 제조
- 천연가스 가공
- 질소 비료 제조
- 유지화학물질 제조
- 농약 제제, 제조 및 포장
- 석유계 폴리머 제조
- 석유정제
- 의약품 및 생명공학 기반 제조
- 인산 비료 제조

#### 임업

- 보드 및 파티클 기반 제품
- 임산물 생산
- 펄프 및 제지 공장
- 제재 및 목재 기반 제품

#### 일반 제조업

- 비금속 제련 및 정련
- 시멘트 및 석회 제조
- 세라믹 타일 및 위생도기 제조
- 건설용 원료 채굴
- 주조
- 유리 제조
- 일관 제철소
- 금속, 플라스틱, 고무 제품 제조
- 인쇄
-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 가죽 제조
- 직물 제조

인프라

- 항공 운송
- 공항
- 원유 및 석유 제품 터미널
- 가스 배급 시스템
- 의료 시설
- 항만 및 터미널
- 철도
- 석유 소매 네트워크
- 해운
- 통신
- 유료 도로
- 관광 및 숙박시설 개발
- 폐기물 관리 시설
- 물과 위생 시설

광업

- 광업

석유 및 가스

- 해상 석유·가스 개발
- 육상 석유·가스 개발
- 액화 천연가스 시설

전력

- 송전 및 배전
- 지열 발전
- 화력 발전
- 풍력 발전